

함께 봐요 안전보건



www.inochong.org

01
산업안전보건 동향

02
사망사고 현황

- 1분기 사고성 사망재해 현황

03
산업재해 예방

- 코로나19와 산업안전보건법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04
산재인정 사례

- 유해인자 수치가 기준치에 미달해도
지속적으로 노출됐다면 업무상재해

산업안전보건 동향



01

2019년 산재사고
사망자 11.8% 감소,
문제점은 없을까?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19년 산재사고 사망자가 지난해에 비해 116명이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1999년 이후 가장 큰 감소 수치라고 발표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 산재사고 사망자수의 통계는 승인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사망사고와 차이가 남
- 건설경기 하락에 의한 작업량 감소가 사망사고 감소와 연관되어 있는가에 대한 검토필요
- 전체 산업재해의 80%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제조업의 사망자수가 증가된 점을 우려하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면제되어 산업안전보건 취약 사업장이 될 수 없기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

02

전면개정 산업안전보건법
1월 16일 시행

30여 년 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1월 16일 시행되었다. 법의 보호대상 확대, 법의 적용범위 명확화,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산업재해 예방책임 주체 확대, 작업중지 강화,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영업비밀 심사,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03

현장실습생 안전사고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조치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시행: 공포 후 6개월 뒤)

3월 24일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규정은 구체적인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 산재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 산재 발생 시 작업중지
-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 안전보건교육 등 일반 근로자를 상대로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 조치
- 사업장의 안전·보건 정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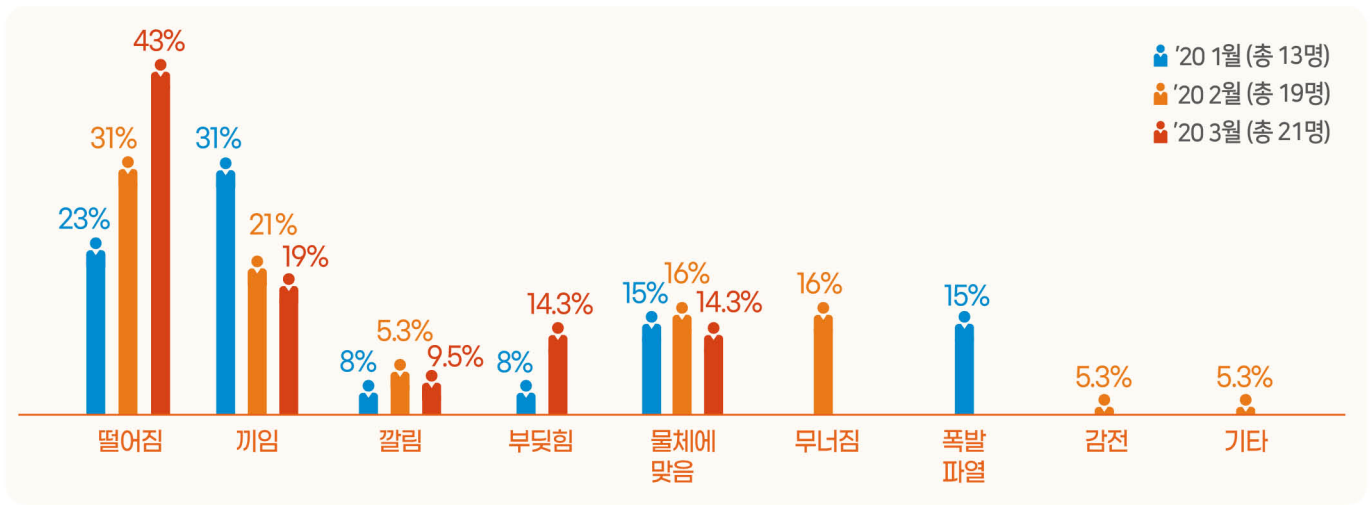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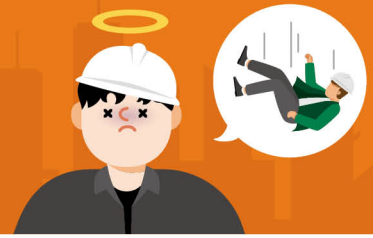
04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기준 완화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기준이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소음 노출 기준이 미달하거나 퇴직한 뒤 고령의 나이에 노인성 난청을 받은 경우는 소음성 난청 산재인정이 어려웠지만 2020년 3월 2일부터 인정기준이 달라짐에 따라서 많은 산재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소음성 난청 산재	현행	개선(2020.3.2 기준)
산업재해 승인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5데시벨(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됐는지 입증 -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음노출정도가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 소음 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충족하고 명백한 업무 외 원인에 따른 난청을 입증하지 못 할 경우(법적 소음작업장 등) - 소음성 난청이 발생한 고령 퇴직자의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 보다빠르거나 중할 경우
산업재해 불승인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음 노출 기준에 미달 - 오래 전 퇴직한 뒤 고령의 나이에 노인성 난청을 받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백한 다른 원인으로 발생된 경우는 제외 (질병, 유전 등) - 업무관련성 조사결과 양 귀의 청력역치가 40dB미만이거나, 소음노출기간 동안 소음노출정도가 80dB미만인 경우

사망사고 현황



01 2020년 1분기 산업현장 사망사고 1위는 떨어짐 19건

사망사고 1위 떨어짐

• 떨어짐 : 높이가 있는 곳에서 사람이 떨어짐(구 명칭 : 추락)

02 떨어짐은 높은 곳에서?

2.5m 이하 낮은 높이

떨어짐재해는 높은 곳에서 작업하다가 사고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2.5m 이하 낮은 높이에서는 떨어짐 사망사고의 16.2%가 발생한다. 떨어짐에는 안전한 높이가 없다.

03 떨어짐의 주요 기인물은?

비계 지붕 사다리

04 떨어짐 예방법

안전모 안전대

안전난간 작업발판

- 1. 비계 · 지붕**
 - 작업발판, 안전난간, 떨어짐 방호방 등 떨어짐 방지조치
 - 안전모, 안전대 등 적합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 2. 사다리**
 - A자형 사다리의 경우 3.5m 이하의 높이에서 사다리이용이 불가피한 경작업에만 사용
 - 안전모, 안전대 등 적합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 2인 1조 작업으로 사다리 흔들림 방지
 - 일자형 사다리는 75도 이하로 설치하고,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끄럼방지 조치

산업재해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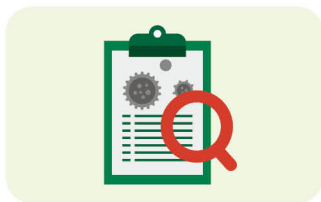


01 코로나19와 산업안전보건법(3가지)

-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사업주 등의 의무)
- 사업주는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 (보건조치)
- 사업주는 감염병 등으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의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02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 사업장 대응 지침



사업장 차원의 발생 동향 파악

사업장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결근 노동자의 동향 및 코로나 19 의심 등 전염병 증상을 나타내는 소속 노동자의 발생 동향을 철저히 파악

※ (소속 노동자) 하도급, 파견, 용역 노동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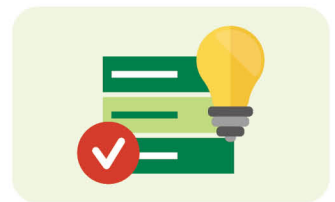
적절한 격리 조치

사업장의 경영자는 소속노동자 가운데 코로나19 환자(격리대상자 포함)가 발생하면 즉시 적절한 격리



보건담당자 지정 및 교육

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 포함)등 보건업무 담당자는 본 지침 내용을 소속 노동자에게 철저히 교육하고 이행상태를 확인



사전 대응계획 수립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하여, 사업장 차원에서 경영유지 및 업무 지속을 위한 전담부서 또는 전담자를 지정하고 대비·대응계획을 수립

• 노동자 위생관리 및 사업장 청결·소독 유지

개인위생 관리 강화



- 손씻기와 손 소독제, 일회용 수건, 화장지 등 위생 관련 물품을 충분히 비치
- 기침예절 준수
- 보호구 및 위생관련 물품을 사전 충분히 준비

사업장 내 청결 유지



- 사업장 내 청결·소독 유지
- 청소·소독 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사용법 및 용법·용량을 준수

노동자 및 방문객 대상 개인위생 실천방안 홍보



- 기본적인 개인위생 실천방안을 홍보
※ 마스크, 비누, 손소독제, 소독용 세제, 체온계 등
- 홍보 안내문, 포스터 등을 부착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자료 등을 활용

사업장 운영시설 위생관리



- 사업장이 운영하는 기숙사의 청결유지 및 침구류, 수건류를 분리하여 사용
-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경우 자주 소독하고 기침예절 준수

●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 방지

01 노동자 대상 마스크 착용 권고

발열,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선별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도록 권고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

- 입과 코 완전히 가리기
- 얼굴과 마스크 사이의 틈이 없도록 밀착
- 마스크를 착용 전 · 후 손 씻기 또는 손소독제로 닦기



03 유연근무제 활용 및 모니터링 실시

- 휴가, 재택근무 또는 휴업 활용
- 집단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은 상시 모니터링 실시



- ※ (집단시설) 학교, 사업장,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 ※ (다중이용시설)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 체육시설, 쇼핑센터, 영화관 등

02 해외 출장 전후 관리 강화

- 해외에서 지켜야할 주의사항, 귀국 후 유의사항 숙지
- 건강상태질문서에 사실 그대로 기술
- 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 방문 시 해외 여행력을 반드시 알림



04 서비스 업종 자체 대응계획 수립

-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점검, 대응계획을 수립
손소독 및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
- 필요한 위생용품을 비치



● 사업장 내 의사환자 및 확진 환자 발생시

01 증상유무 확인 및 신고

- 의사환자 발견 시 증상 유무 확인 및 마스크 착용하고 즉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신고
- 보건소의 검사와 역학조사까지 사업장 내 격리장소에서 개인 보호구 착용 후 대기



- ※ (격리장소) 임시 격리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보건소 지시사항에 따라 수행
- ※ (개인 보호구) 보건소 담당자 도착 전, 의심환자와 접촉하는 담당자도 마스크 착용

03 확진 환자 발생 시 알림 철저

- 확진 환자 발생 시 사업장의 모든 모든 노동자에게 알림
※ 하도급, 협력업체, 파견, 용역노동자 포함



02 격리 장소 소독 및 접촉자 자가 격리

- 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를 소독
- 자가 격리 대상자의 경우 출근을 하지 않고 관리자에게 보고 후 보건당국 안내에 따라서 병원 또는 자가 격리



04 사업주의 역학조사 적극 협조

- 사업주는 심층역학조사에 적극 협조
-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조치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는 적극 협조
- 확진 환자 노출된 장소는 소독 실시 후 다음날까지 사용을 금지



산재인정 사례



01 유해인자 수치가 기준치에 미달해도 지속적으로 노출됐다면 업무상재해



산재 불승인에 대한 소송 끝에 산재인정

2020년 1월 10일 한솔케미칼에서 전극보호제·세정제 등을 생산하는 업무를 하다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노동자(망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있었다. 이 판결은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한 판결이 소송 끝에 바뀐 것이라 의미가 크다.

근로복지공단은 불승인,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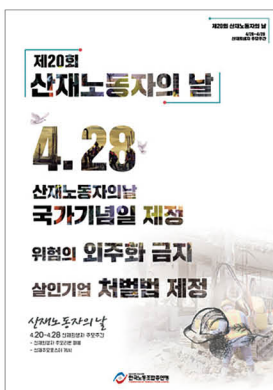
망인이 일한 사업장에서 백혈병 유해인자가 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검출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이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면서 취소한 이유는?

법원은 망인이 한솔케미칼에서 일하던 중 백혈병 주요 유해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백혈병이 발병하였고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평가하며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 한솔케미칼은 백혈병 유해인자를 취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환경부의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의 결과와 환경노출평가 결과 등을 종합할 때 노출수치는 별론으로 하여도 망인이 백혈병 주요 유해인자인 벤젠, 1,3-부타디엔, 포름알데히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던 것으로 확인됨.
- 백혈병 주요 유해인자인 벤젠, 1,3-부타디엔, 포름알데히드 등 여러 유해인자가 복합적으로 노출된 경우의 상승작용을 일으켜 질병 발생의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백혈병 발병 직전 월평균 상당한 초과근무시간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근로자 보다 많은 시간 동안 유해인자에 노출되었을 것이라 판단함.
- 한솔케미칼의 작업환경측정을 함에 있어서 백혈병 주요 유해인자가 빠져있고 이에 따라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 방지 조치를 적절히 취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판단함
- 한솔케미칼 뿐만 아니라 관련 행정청에서 망인이 직접 수행한 공정과 물질에 관한 자료 등의 제출을 거부하고 법원의 명령서를 반송하는 것은 망인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어느 정도 고려함.
- 망인이 백혈병 호발연령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건강상의 결함이나 생활습관, 가족력 등 유전적인 요소도 확인되지 않은 점을 함께 고려함.

산재예방 포스터 바로가기



산재예방 카드뉴스 바로가기

